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11 선고 2022가단227835(본소), 2022가단291195(반소)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등 · 임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유한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향은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우

담당변호사 노동선

변 론 종 결 2023. 2. 21.

판 결 선 고 2023. 4. 1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미화 57,45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부터 2023. 4.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미화 2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업무계약서(계약기간 2019. 12. 1.부터 2021. 11. 30.까지)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미화 57,450달러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미화 57,450달러(선택적으로 77,155,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9. 12. 1.경 별지 내용과 같은 업무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를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미국 내에서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마케팅을 대행할 수 있는 비배타적 권리를 피고에게 부여하고 2019. 12. 1.부터 2021. 11. 30.까지 매월 미화 6,000달러를 급여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서 피고에게 매월 미화 6,000달러를 지급하여 왔었는데 원고 측은 2020. 3. 27.자 이메일을 통하여 코로나 사태 등 원고의 자금악화 사정 등을 이유로 들면서 “급여를 당분간 50%만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2020년 4월분부터는 미화 3,000달러를 지급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모두 86,550달러에 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 중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2020년에 500만 달러, 2021년에 1,2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려줄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을 하였고, 이에 속아 착오에 빠진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2-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2020년에 500만 달러, 2021년에 1,200만 달러의 매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이메일로 원고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당시의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일종의 목표, 전망, 계획 등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위와 같은 금액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확약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계약 역시 그러한 피고의 매출전망이 계약의 내용으로 기재되거나, 매출전망과 실적 등에 따라 급여가 연동된다는 취지로 규정된 바도 없다. 아울러 원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2019년 말부터 발생한 코로나 사태와 국제시장의 불경기 등 불가피한 대외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가 고의적으로 과장된 매출전망 등을 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원고가 중대한 착오를 야기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3. 본소 청구 중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의 총액은 미화 144,000달러인데 원고는 미화 86,550달러만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잔액인 미화 57,450달러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계약은 사기 내지 중대한 착오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취소하거나, ② 2020. 4.경부터 지급할 금원이 미화 6,000달러에서 미화 3,000달러로 감액하는 것으로 합의 내지 채무면제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사기 내지 중대한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

이 사건 계약이 사기 내지 중대한 착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는 위 2.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잔여 금액 지급의무의 존부

2020. 4.경부터 이 사건 계약종료 시점인 2021. 11. 30.까지 매월 미화 3,000달러로 감액된 금원이 지급된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결국 이 부분 쟁점은 금원 감액에 대하여 합의 내지 채무 면제가 존재하느냐의 여부이다.

채권의 포기(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 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하나, 그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다30596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27150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05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을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금원 감액에 대하여 합의가 존재하였다거나, 채무면제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제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 측은 2020. 3. 27.자 이메일을 통하여 미화 3,000달러로의 감액을 통보하였으나, 이에 대한 피고의 승낙이나 확답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② 원고 측의 위 이메일에 따르면 ‘당분간 50%’를 수용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감액임을 통보하였다는 점, ③ 원고는 2021. 9. 27.자로 재차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이 50% 삭감이었다는 취지로 통보를 하였지만, 피고는 “2020년 April(4월)부터 누락된 급여지불 계획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여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가 2020. 4월분부터 미화 3,000달러를 수령하여 왔지만, 기존에 약정된 미화 6,000달러를 3,000달러로

감액하는 것으로 합의에 동의하였다거나, 채무 면제를 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약정금인 미화 57,450달러¹⁾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종료일 다음날인 2021. 12. 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3. 4. 11.까지 피고가 구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2%²⁾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와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안홍준

별지

1) 피고는 미화 내지 반소장 제출 당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한 원화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의 청구가 기본적으로 이 사건 계약에따른 약정금의 성격이 있고, 이 사건 계약상 명시적으로 미화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화의 지급을 명하도록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일종의 고용계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계약은 피고에게 마케팅에 관한 비배타적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이고, 일정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원고가 피고에게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휘·감독을 하는 관계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을 고용계약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의 산정에 있어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2%를 적용하기로 한다.